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49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박균택·박 정·박홍배  
주철현·염태영·이건태  
박지원·허 영·박용갑  
김문수·양부남·위성곤  
김종민·김주영·김동아  
박해철·한민수·황명선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교통이 위험·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2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의 조

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58조, 제153조제1항제2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모범운전자

나.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다.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라. 「도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안전순찰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5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조치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자동차 통행의 일시 제한
  2. 사고 차량 및 탑승자의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경찰청장은 안전순찰원에게 고속도로에서의 경찰보조자로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내용·주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3조제1항제2호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p> <p>1. (생략)</p> <p>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p> <p>-----</p> <p>-----</p> <p><u>가. 모범운전자</u></p> <p><u>나.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u></p> <p><u>다.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u></p> <p><u>라. 「도로법」 제57조의2제1</u></p>

<신 설>

② (생 략)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 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항에 따른 안전순찰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안전순찰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① -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다)에게 제1항의 조치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자동차 통행의 일시 제한
2. 사고 차량 및 탑승자의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경찰청장은 안전순찰원에게 고속도로에서의 경찰보조자로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내용·주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3조(벌칙) ① -----  
-----  
-----  
-----  
-----  
-----

<p>1. (생략)</p> <p>2. 제41조, 제47조 또는 <u>제58조</u> <u>에</u>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 해한 사람</p> <p>3. ~ 7. (생략)</p> <p>②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58조</u> <u>제1항에</u>----- ----- ----- -----</p> <p>3.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